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4년 9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일

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·퇴직 공직자 대상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권고(2021. 4. 12. 의결)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(삭제)하고,
-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히 하고,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용어 정비(안 제2조, 제5조, 제8조)
 - 선택적→맞춤형,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준용
- 후생복지사업 명확화(안 제7조)
 - (삭제)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 대상 국내외 시찰 일률적 지원 규정
 - (신설)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, 건강검진비, 단체보험비, 예방접종 지원 등 근거 규정 명확화

3. 조례안(개정조례안)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)”을 “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선택적”을 각각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제7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

8.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

9.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

제8조제1항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“선택적 복지제도”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	3. - <u>맞춤형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<u>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</u>)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<u>선택적</u>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	제5조(<u>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맞춤형</u> ----- ---.
② <u>선택적</u>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	② <u>맞춤형</u> ----- -----.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·외 시찰</u>	<u><삭 제></u>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<u>소속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8.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</u>
<u><신 설></u>	<u>9.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</u>
<u>7. (생략)</u>	<u>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
제8조(운영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,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<u>선택적</u>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.	제8조(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맞춤</u> <u>형</u> ----- 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0., 2021. 10. 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 5. 18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□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9. 8., 2013. 6. 21.>

1.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2. 삭제 <2013. 6. 21.>

3. 삭제 <2013. 6. 21.>

4. 삭제 <2013. 6. 21.>

5. 삭제 <2013. 6. 21.>

6. 삭제 <2013. 6. 21.>

7. 삭제 <2013. 6. 21.>

8. “운영기관의 장”이란 「공무원임용령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3. 6. 21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21., 2014. 11. 19.>

1. 휴직 중인 공무원

2.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

3.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

4.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
<신설 2020. 3. 10.>

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20. 3. 10.>